

**피델리티 UCITS II ICAV**  
투자설명서 주요 변경 사항

효력발생일: 2021년 12월 29일

정정사항: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2021년 12월자 First Addendum 발행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2부 9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 조 -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글로벌 투자설명 서의 Addendum 발행 - <u>녹색금융 분류체계 (Taxonomy Regulation)</u> 관 련 내용 추가	=	<p><b>녹색금융분류체계 (Taxonomy Regulation).</b> 녹색금융분류체계에서는 특정 환경 목적 상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에는 오직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만이 동 환경 목적에 해당합니다 (“환경 목적”). 또한, 녹색금융분류체계에 따라 운용회사는 각 하위펀드의 투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방식 및 그 범위를 글로벌투자설명서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.</p> <p><b>SFDR 제8조의 공시요건 대상 하위펀드</b> (하위펀드 보충본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) SFDR 제8조의 공시요건의 대상이 되는 각 하위펀드의 투자방침에서는 해당 하위펀드 보충본에 작성된 바와 같이 해당 하위펀드가 기후목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환경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.</p> <p>※ 현재 한국에 등록된 하위펀드는 SFDR 제8조의 공시요건의 대상이 아닙니다.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글로벌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<b>기타 하위펀드</b> 투자자들은 (하위펀드 보충본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) SFDR 제8조에 따른 공시요건의 대상이 되는 하위펀드를 제외한 각 하위펀드와 관련하여, 동 하위펀드의 투자자산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EU 기준이 고려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[붙임 3] 용어풀이	글로벌 투자설명 서의 Addendum 발행 - 용어정의 추가	“녹색금융분류체계 규정”, “기술적 기준” 관련 용어풀이 추가 *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